

축산업계

소식

닭 뉴캐슬병 주의보 발령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10일 닭 뉴캐슬병주의보를 발령했다.

닭 뉴캐슬병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급속하게 전파될 뿐아니라 폐사율이 거의 100%인 무섭고 피해가 큰 법정전염병으로 1988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크게 만연되어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들어 백신의 사용량이 '89년 6월 현재 344백만수분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중부지방에서는 발생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경기, 충남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상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심이 부족했던 전북, 경남 등의 남부지방에서는 최근 뉴캐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바 양계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망한다.

1. 주요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서는 2주령 전후에서부터 발병이 가능하고, 발병 2~15일 사이에 100%까지 폐사가 된다.

○ 처음에는 졸기 시작하여 콧물을 보이며 호흡곤란, 가침 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고 푸른똥을 누기도 한다.

○ 어린닭에서는 신경증상으로 다리와 목의 마비 및 떨림이 나타나고, 산란계에서는 뚜렷한 증상없이 산란율만 떨어지거나 산란중지가 되기도 한다.

○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잘못되어 항체가 높지 않은 닭에서는 폐사는 심하지 않지만 다리와 목이 마비되는 신경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예방조치

○ 계사와 양계기구 특히 난좌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한다.

○ 동시입식, 동시출하방법이 사육을 실시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양계농가의 방문을 삼가한다.

○ 병든 닭은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받아야 한다.

○ 현재와 같이 강독 뉴캐슬병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생독백신만으로는 100% 예방이 불가능하니 특히 닭장사 출입통제, 철저한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 예방접종요령

○ 뉴캐슬병 예방접종 기본프로그램

— 1차예방접종시는 모체이행항체 검사를 하여 항체역가가 높을 때는 예방접종을 생략할 수 있다.

— 보강접종때 사독오일백신으로 접종하면 종신면역이 되나 생독백신을 사용시는 2~3개월마다, 사독겔백신을 사용시는 3~4개월마다 재접

○ 뉴 캣슬병 예방접종 기본프로그램

닭	백신종류	접종방법	백신접종시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	생 독	음 수	(1주령) B1	2주령 B1	4주령 B1	-	-
채란계	생 독	음 수	(1주령) B1	2주령 B1	4주령 B1	8주령 라소타→사독오일백신 또는 사독겔백신→사독오일백신	16~18주령
	사 독	근육주사					

종을 하여야 한다.

○ 과거 뉴캣슬병으로 심하게 오염된 농장이나 기본프로그램대로 예방접종시기를 3주령으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4차접종때도 라소타 보다는 사독겔백신접종이 효과가 더욱 크다.

농어촌공사 내년초 설립 — 농업구조개선 업무 전담 —

정부는 자본금 5천억원을 투입해 농어촌공사를 내년초까지 설립한다.

현금 5백억원, 현물자산 4천5백억원 등 5천억원의 법정자본금으로 세워질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통합 설치될 것이다. 이 공사는 전업농 육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93년까지 2조원의 자금을 조성 농가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농지매입·매도사업, 농지수탁 알선, 임대차료 지급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되고 부재지주에게 돌아가는 연간 4천여억원의 임대차료가 농민에게 환원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1천억원의 범위에서 은퇴농가나 영세농가 소유농지 3,300 ha 정도를 매입, 실수요자인 전업농에게 재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업, 탈농,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전업농에게 5~10년 계약기간에 빌려줄 예정이다.

축산법중 개정령 공포 — 축산업심의위원회 구성 —

정부는 개정축산법 시행을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한 축산법 중 개정령을 7월13일 공포했다.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허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축산업의 등록 및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소속 1급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소속 2급 또는 3급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양축가, 축산관련단체의 장, 축협의 임원과 축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축산업의 허가기준 △대기업의 기준 △축산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본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관련 기관 위원이 너무 많아 전근대적인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이들 위원을 줄여줄 것을 의견제시하였지만 정부관련기관의 위원이 더 강화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 산림보전지역안에서 축산시설 설치 가능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6월 24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산림보전 지역안에서 축산시설의 설치를 못하게 하였으나 산림보전 지역안에서도 축산시설의 설치와 기존의 시설·건축물 개축 및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농축수산물 검역 강화키로 — 검역소 인력·기구 확대 —

농림수산부는 본격화된 농산물 수입에 대비 동식물검역소의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검역출장소를 증설하여 기구도 확대 개편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검역강화는 식품검역소에 507명, 동물검역소에 100명 등 모두 607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키로 하고 총무처 관련부처에 직제개편을 요청키로 했다.

식물검역소는 국내검역, 국제검역, 국제정보, 조사시험 등 5개과로 확대하고 국제검역에 대비, 검역소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조정하며 또한 현재 12개소인 출장소를 29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동물검역소는 본부 2개과와 2개 지소를 신설, 검역관 등 100명을 증원하고 설파메타진 등 각종 항생물질 잔류량을 측정하는 HPLC 측정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업발전대책에 관한 성명서 발표 — 전국축협조합장 —

전국축산업조합장 일동은 지난 19일 축산물가 격안정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이 발표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축산발전으로 △축산물가격 안정제도를 법제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육류 등급제 △축산자금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축산에 대한 국고예산규모를 확충 △공공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비의 국고지원 확대 △획기적인 초지조성대책 마련 △수출유망축종에 대한 수출을 적극 지원 △생산자 단체의 육가공사업 지원 △축산진흥기금의 확대 조성 등으로 축산물 소비홍보, 조사연구사업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법 시행령 개정 — 1,500㎡이하 허가 없이 전용가능 —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는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의 면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7월 21일 공포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1,00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66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과 계사, 우사, 돈사, 사일로 시설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 1,500㎡이하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농지 개발이익세 부과 — 자경농지에도 개발이익세 —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농지에도 개발이익세를 부과키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은 △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올라 토지 소유자가 얻은 개발이익에 대해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넘은 초과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 개발이익세의 부과대상 토지는 3년간 땅값 상승율이 정상지가 상승율을 넘어선 지역과 1년간 땅값이 정상보다 1.5배이상 오른 지역이다. △ 1가구 1주택의 택지는 개발이익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민의 자경농지, 기준면적 이내의 자영목장,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등은 일단 보유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되 징수는 해당 토지를 파는 시점까지 유예하고, 부재지주농지, 1가구 2주택 택지, 자영치 않거나 기준면적을 넘은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에는 보유상태에서 세금을 부과 즉시 징수한다.

◇ 과세대상토지의 분류

구 분	보유시부과·징수	보유시 무과, 처분시 징수
◇선택기준	○ 자기의 생활·생산활동과 무관한 투기 성향의 보유토지	○ 생활·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대상토지	○ 상한규모 초과택지	○ 상한규모이내도서 1가구1주택 부속토지
○주거용토지	○ 1가구 2주택 이상 부속토지	는 면제
○농 지	○부재지주소유지	○자경농지
○목 장 용 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자영목축업자가 아닌자의 목장지	○자영목축업자의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지
○임 야	○영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임야 ○자영임업자가 아닌자의 임야	○자영임업자의 영업계획이 제출된 임야
○법인보유토지	○기준공장면적초과 공장용지	○기준공장면적이내 토지
○건축물부속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 타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종립 ○잡종지	○도시계획구역외의 종종립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개정 — 업종별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강화 —

농림수산부는 지난 6월27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축협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1. 설립동의자의 수가 100인 이상, 2.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 3. 사업계획서에 의한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4. 사업계획서에 의한 상근직원수가 5인 이상이 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조합의 구역조정, 조합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관한 징계,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당시의 업종조합으로서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되는 업종별조합은 92년 12월31일까지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중앙회의 개최 — 7월28일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 —

제73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중앙회의 (위원장 박근식 소장)가 지난 7월 28일(금) 안양 소재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옥경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전동용 양돈협회장 등 19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예방약 소비현황, 질병예찰 상황 자료를 검토하고 부의안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절기 돈콜레라 및 돈단독 예방대책 △닭질병(뉴캣슬·류코싸이토준병) 대책 △소바이러스성 질병(아까바네병, 유행열)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8월부터 돼지 콜레라 살처분보상제도가 없어짐에 따른 대양축가 홍보를 위해 장마후 수인성전염병 대책과 함께 발생주의보를 발령키로 하였다.

이밖에 닭질병대책으로 최근 예방약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발생상황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강상태에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장마이후의 가축방역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더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역설하였다.

양축·영농자금 금리 5%로 인하 — 83,84년 소입식자금 무이자 분할상환 —

양축·영농·영어자금의 금리가 현행 8%에서 5%로, 농기계구입자금은 8~11.5%에서 5%로 인하되었다. 83~84년 소입식자금은 5년거치 5년분 할상환 조건으로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가 면제되었다.

적용시기는 양축·영농·영어자금의 금리인하는 금년 1월1일부터이며, 소입식자금의 상환기간은 금년 5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군 부식물 관납 조합특례조치 폐지 — 축협조합장들 반발 —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예산회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축·수협은 수의계약에 의해 군 부식물을 관납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 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합의 군 부식물 관납이 공개입찰로 전환되므로 협동조합에 부여하는 특례조치가 없어졌다.

이에대해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관계당국에 관납특례조치를 폐지한 법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축협이 대기업 등 일반군납업자와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군납에 참여하면 경제적 약자인 양축농가는 직·간접으로 불이익이 초래할 것이므로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 완전개방 요구 — GATT BOP 통해서 —

미국은 6월말 열린 GATT BOP(국제수지협의회)에서 오는 94년까지 한국 농축산물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89~91년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예시(237개 품목) 이후 수입제한품목으로 남은 264개 농축수산물을 92~94년 사이에 모두 개방할 것 △이를 위해 90년 3월까지 수입개방 예시계획을 제시할 것 △수입개방예시계획은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만들 것 등이다. 또한 이에대한 한국측의 답변을 10월까지 GATT BOP에 내놓도록 요구했다.

최근 육가공통조림 수입으로 대한종합식품 등 국내 생산회사가 문을 닫는 등 산업구제요청을 내고 있는 현실에 정부의 협명한 대처가 요구된다.